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'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경제투자본부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

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제6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남은 임기”를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도의회에서 추천한 자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	<p>제8조(구성 및 운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경제통상국장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3.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⑥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	<p>3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⑥ ----- 해당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남은 기간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